

#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2.

발의자 : 조정식 · 안태준 · 이해식  
조인철 · 정태호 · 이수진  
김현정 · 남인순 · 박선원  
김주영 · 전용기 · 이학영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’ 및 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’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상 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’ 및 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’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의2 제1항).



##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제1호라목 중 “제9조까지”를 “제11조까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마. (생략)	마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